

「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령안」을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10월 23일

국토교통부장관

1. 개정이유

「저출생 추세반전을 위한 대책(6.19)」 및 「주택공급 확대방안(8.8)」에 따라 신생아 가구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재계약 요건을 완화하고 비아파트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한 전세임대 신규유형을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신규 출산한 가구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소득·자산과 무관하게 재계약을 허용하여 신생아 가구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(안 제17조의2)
- 나. 신생아 가구가 희망하는 경우 지원단가가 높은 다른 전세임대 유형으로 변경을 허용하여 신생아 가구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(안 제17조의2)
- 다. 신혼·신생아Ⅱ 유형으로 입주하는 경우 소득·자산 요건을 완화하여 중산층 신생아 가구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(안 제7조의4)
- 라. 비아파트 특례 전세임대를 도입하여 전세사기 등으로 기피되는 비아파트 전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(안 제7조의7, 제10조의5)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(주거복지지원과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행정예고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 → 정보마당 → 법령정보 → 입법예고·행정예고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(우편번호: 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

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

- 팩스 : 044-201-5572

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) 『정보마당-법령정보/입법예고』란을 참조하시거나,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(전화 044-201-4479, 4511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